57. 스티커 제조공에서 발생한 두경부 악성종양

성별 남 나이 38세 직종 스티커제조공 업무관련성 낮음

1. 개요: 근로자 송OO는 1996년 11월 (주)제OO에 입사하여 스티커 제작 공정에서 접착
작업 등을 하던 중 2004년 11월 상악동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06년 11월 25일 사망하였다.

- 2.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: (망) 근로자는 (주)OO에 1996년 11월에 생산부 대리로 입사하여 2006년 2월까지 각종 접착 물질을 취급하였는데, 근로자 본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작업 중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. (주)OO은 종이라벨 원단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오전 8:30분부터 18시까지로 주간 작업을 한다. 작업공정은 원자재가 입고되면 원단에 코팅을 한 후 접착제를 도포하여 합지를 하고, 커팅 및 출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. 코팅은 실리콘 제제로 하였으며 합지공정에서는 접착제를 사용하였다. 코팅 및 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에멀젼 접착제, 코팅제로 사용하는 실리콘, 희석제로 사용하는 톨루엔 등이 있으며,이들 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톨루엔 희석제, 유성 접착제, 수성 접착제 및 경화제의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, 분석한 시료들에서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다. 근로자의 근무공정인 코팅/합지 작업부서는 2005년 상반기와 2005년 하반기에 작업환경측정에서 개선 및 권고를 받았다.
- 3. 의학적 소견: 2004년 11월 경, 근로자는 윗잇몸에 이상을 느껴 G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진료한 결과, 상악동암으로 진단되었으며(squamose cell ca, stage IV N1 M0), 2004년 12월 23일 좌측 상악동절제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다. 그러나 2005년 9월경 다시 재발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제 4 병기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6년 2월 퇴직 후 치료 중 동년 11월 25일 상기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.
- 4. 결론: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(망) 송OO는
 - ① 1996년부터 (주)OO에서 근무하면서 접착제, 코팅제 및 경화제 성분에 노출되어 오다가 2004년 1월 상악동암에 이환되어 2006년 11월 사망하였는데,
 - ② 송OO가 근무한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상악동암과 관련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.
 - ③ (주)OO의 주요 취급물질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등의 상악동암 관련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.
- 이 근로자의 두경부악성종양(상악동암)은 작업 중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